

【별지 제2호 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양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총보조사업비^{주1)} ☒ 순보조사업비^{주2)})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보건복지부		
프로그램명	노인생활안정	단위사업명	노인돌봄서비스
세부사업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역사업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상위보조사업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조사업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조사업자	효림원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보조사업 담당자	이동영
총 사업기간	2024-01-01~2024-12-31	당해연도 사업기간	2024-01-01~2024-12-31

2.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 ^{주3)}

(단위: 원)

보조금(㉔)	지자체부담금(㉕)		자기부담금(㉖)	합 계(㉗=㉔+㉕+㉖)	보조금비율 (㉘=㉔÷㉗)
	시도	시군구			
726,947,900	155,774,550	155,774,550	0	1,038,497,000	70%

3.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산출 ^{주3)}

(단위: 원)

당기분 집행액 (㉙)	전기이월분		집행액계 (㉚=㉙+㉛)	수익금		
	전기 이월액(㉜)	집행액 (㉝)		발생액 (㉞)	반환액 (㉟)	미반환액 (㊱=㉞-㉟)
1,018,714,729	0	0	1,018,714,729	281	281	0

당기분 집행잔액 (㉒=㉙-㉙)	전기이월잔액 (㉓=㉜-㉜)	집행잔액 (㉔=㉒+㉓)	발생이자 (㉕)	차기 이월액(㉖)
19,782,271	0	19,782,271	11,710,626	0

반환대상액 (㉗=㉔+㉕+㉖-㉖)	보조금 반환액 ^{주4)} (㉘)	지자체부담금 반환액 ^{주4)} (㉙)	자기부담금 정산잔액 (㉚=㉗-㉘-㉙)
31,493,178	22,045,250	9,447,928	0

주1) 총보조사업비 =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지자체부담금 포함) + 자기부담금

주2) 순보조사업비 = 총보조사업비 -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보조금(지자체부담금 포함)

주3)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집행관리하는 보조사업은 2번과 3번 항목이 자동 생성됨

주4)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되, 보조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등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집행잔액 산정